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김진선**

- I. 서론
- II. 난민 개념의 국제적 형성과 발전
- III. 한인(韓人) 정체성과 난민 인식
- IV. 국가와 인권의 범주에서 난민 인식
- V. 자연상태의 난민 개념과 인식
- V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난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현재까지의 난민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적 난민 개념의 형성과 발전, 한국사에서 난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주권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한국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내부적 난민을 양산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까지도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다.

난민 문제는 국가주권과 인권의 대립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와 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627).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E-mail: cumdaphil@gmail.com)

하고, 동시에 국제적, 국가적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각자의 역사, 문화,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난민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내부적 난민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비국민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한인(韓人) 난민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으로 온 난민에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으며, 낯선 타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인간적 교류와 공존을 위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 : 난민, 내부적 난민, 포용/배제, 한인 난민(韓人難民), 타자

I. 서론

탈냉전 이후에도 난민 발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대륙에서 발생하는 민족과 종교 분쟁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경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진 세계화는 보편적 가치의 확대 보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¹⁾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의 폭발적 증가는 글로벌 자본주의 동력과 군사개입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²⁾

현재 난민 개념은 국제법상의 정의, 즉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1) 단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벌어진 미국 주연의 블록버스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0만 명, 이라크에서 15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다(이상철, 「난민(難民, Refugee)」, 『제3시대』 27·28, 2011, 12쪽).

2) 슬라보예 지젝 지음, 김희상 옮김, 『새로운 계급투쟁』, 자음과 모음, 2016, 22쪽. 여기서는 오창은, 「난민의 세계화와 현대성의 파국」, 『문화과학』 88, 2016, 40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협약난민’ 개념은 난민이 유럽 안에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난민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난민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발생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난민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시각’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권과 인권에 대한 해석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온도차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 지역적 차이는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띠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식적 특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 국가의 성원으로서 ‘우리’라는 틀에서 난민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기보다 더 포괄적인 인식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호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거나, 보호의무자로서 기존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논의와 현재 진행 중인 논의들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국제적 범주에서의 인식 변화에 대한 이해와 난민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간적이면서 규범적 인식의 접합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난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가? 여기서 난민은 개념으로서의 난민과 사실로서의 난민 혹은 난민이라고 불리는 타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타자로서 난민의 출현과 그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난민은 우리가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존재하며,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재의 차원에서 ‘있다’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 즉 ‘거기에 무엇이 있다’에서 ‘거기에 있는 무언은 난민이다’로 규정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적 차원이다. 의미적 차원은 언어로 표현되며, ‘난민’이라는 언어적 발화는 의식 앞에 존재하는 타자가 난민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이다.³⁾ 그렇다면 난민의 본

질은 무엇인가?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난민의 총체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난민의 공통적 요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연계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난민의 본질은 그것과 연계 가능한 틀, 즉 범주에서 설명될 수 있다.⁴⁾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이자, 존재에 대한 의식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념으로 존재를 인식하고, 또한 그 인식의 산물이 개념이다. 타자를 지각할 때 우리의 눈이 대상을 관찰하게 된다. 이때의 감각은 의식을 반영하여 ‘~의 시각’에서 인지하게 된다. 난민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가는 곧 어떤 범주에서 보는 것이며, 범주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생활 세계는 경험에 의하며 인식하고 추론하기 때문에 완벽히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 경험과 비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즉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것을 아는 것이다.

라파엘 페르버는 논리가 아닌 어떤 정당한 근거를 통해서 현재의 지식을 미래에도 유효하게 만드는가라는 흄의 질문에 ‘규범’이라고 답한다. 규범은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지금까지 입증된 가정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는 것이며, 그것의 정당성은 개연성이 아니라 규범에 따를 때의 이점에 있다.⁵⁾ 규범은 인간이 생존에 유용한 것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생존의 충동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 인간은 규범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했다. 개개의

3) 이한우에 따르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의 의미를 바꾸고 이름마저 바꾸는 것은 행위이며, 행위가 그것의 의미를 결정한다.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며, 어떤 행위는 그것이 놓이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정해진다. 결국 어떤 대상은 인간 행위의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가 결정된다(이한우, 『한국은 난민촌인가』, 책세상, 2002, 29쪽).

4)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은 존재하는 것의 연계이며, 존재하는 것의 연계는 일정한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 존재하는 것의 연결 가능성은 범주를 통해서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난민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난민은 머그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파엘 페르버 지음, 조국현 옮김, 『철학적 기본 개념』, 동문선, 2002, 114-115쪽).

5) 라파엘 페르버, 위의 책, 2002, 63쪽.

언어 공동체는 각자의 문화를 형성하며 규범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근대 국민국가 성립과 함께 보편적 규범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근대 국가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기본원칙을 표방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 결과 오히려 순수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온전히 허락되었고, 보편적 규범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기능과 의의를 상실하고 포용/배제의 논리에 이용되었다. 국가와 권리, 국민과 인간의 분열은 인간을 '고유한 성질을 갖는 타자로 단절시켰다. 이 지점에서 난민은 인간이지만 고유한 성질을 갖는 국민에서 배제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II. 난민 개념의 국제적 형성과 발전

난민을 지칭하는 'refugee'는 17세기 말 종교적 탄압과 박해로 인해 망명한 이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⁶⁾ 고대에서도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기인 3,500년 전 기록에도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⁷⁾ 20세기 이전에도 난민이 존재했고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유럽지역 안에서 또는 다른 대륙으로의 이주는 비교적 널리 이용되었고, 특별한 원칙이나 제약은 없었다. 자국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주변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었고, 난민들은 새로운

6) 1933년에 발행된 옥스퍼드 사전에는 난민(refugee)을 “종교적 박해(religious persecution)나 정치적 문제(political troubles)로 인하여 외국에 피난처(refuge)를 구하는 자로서 원래는 1685년의 낭트칙령 폐지로 인해 영국으로 온 프랑스 신교도(French Hugunot)”를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김미림, 「難民問題와 UNHCR의 역할-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쪽 참조).

7) 손사라,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6쪽.

기술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난민들의 이동이나 이주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⁸⁾

20세기 들어 난민의 증가에 따라 난민의 이동과 유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각국은 난민 보호에 관한 부담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두 차례 전쟁을 통해 유럽은 국제적인 난민 구호와 귀환에 노력을 기울였고 난민에 대한 인식이 심화 되었다. 1920년대부터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특정한 지역에서 정치적 변란의 결과로 발생한 난민의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집단 전체를 ‘법률적’ 범주를 통해 난민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차츰 ‘사회적’, ‘개별적’ 요소를 난민 개념의 핵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⁹⁾

제임스 해서웨이는 난민 개념의 발전을 세 시기로 나누어 3단계로 설명한다.¹⁰⁾ 첫 번째 시기(1920~1935)는 자국 밖에 있으면서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난민에 포함되었다. 이 시기의 난민 개념은 일반적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었고, 특정한 난민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 1926년 ‘난민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나온 러시아 난민에 대한 정의는 “러시아 출신인 자로 소비에트 정부의 보호를 현재 누리고 있지 않던 가, 또는 과거에서부터 누리고 있지 않은 자이고 동시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모든 자”¹¹⁾였다. 두 번째 단계인 사회적 요건의 시기(1935~1938)에는 ‘사실상’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난민에 포함되었다. 1938년 독일출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법률적 또는 사실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독일 밖에서 거주한 독일인과 독일에서 살아온 ‘무국적자’도 난민 개념에 포함되면서 난민 개념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

8) 정인섭·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138쪽.

9) 정인섭·황필규 편, 위의 책, 2011, 138-139쪽.

10) 제임스 해서웨이의 난민 개념 발전에 대한 설명은 김성수가 요약한 내용을 참고함(정인섭·황필규 편, 위의 책, 2011, 139-140쪽 참조).

11) 김미림, 앞의 논문, 1995, 6쪽.

단계(1938~1950)는 소위 ‘협약난민’이라고 하는 난민 개념이 정립된 시기이다. 난민을 집단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개인적 결단에 따라 자유와 안전, 정의를 찾아 자신이 원래 소속하던 국가를 이탈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난민 개념의 핵심은 난민신청자 개인의 속성(인종, 언어, 혈통, 민족 등)이나 신념(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과 원 소속국의 정치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¹²⁾

난민협약을 거쳐 1967년 난민의정서에서 시간적 제약과 유럽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보편적 국제규범이 되었고, 난민 개념 또한 일반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박해의 이유를 5가지, 즉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국한 시키고 있어서 자연재해, 정치적 변란, 외국 군대의 침입, 식민지배 등 여러 난민 발생의 원인들은 협약난민 개념에서 제외되었다.¹³⁾ 이러한 난민 개념은 유럽에서 이념적 대립 하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석의 융통성이 필요하며, 협약 전문의 맥락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 ‘무국적자’의 경우에도 처음 난민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지만 협약 체결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국적국의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자와 사실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으로 구분

12) 1951년에는 집단적 난민 개념을 고수하려고 하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본위로 난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정치적 이념 등의 이유로 공산권 국가를 이탈한 경우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 난민협약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난민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했다(정인섭, 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143쪽). 마이클 왈쩌는 난민에 대한 상호부조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인종, 이데올로기상의 친근성도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연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원칙을 구현하고자 할 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도 이런 원칙을 옹호하도록 격려하고자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마이클 왈쩌 지음, 정인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학실사, 2017, 101쪽).

13) 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144쪽.

되었다.¹⁴⁾ 단, 무국적자는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 난민 인정이 가능하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규범에서의 난민 개념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난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난민 발생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난민 인정 범위를 확장해서 정의하고 있다.¹⁵⁾ 하지만 선언의 형식이기 때문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난민 보호 차원에서 개념 확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난민에서는 ‘내부적 난민’이 제외돼 있지만¹⁶⁾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분쟁과 폭력으로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집을 잃거나 거주지를 이탈한 사람들을 국내실향민(국내유민)으로 구분한다. 또한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으로 난민의 대량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⁷⁾

14) 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158쪽.

15) 아프리카 연합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는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있어서 특정 쟁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 제2항에서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원 소속국의 일부나 전체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 소속국 밖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상거주지를 떠나게 된 사람”을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메리카 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도 1984년 카르타헤나 난민선언에서 난민개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함. 난민의정서에서 인정되는 난민 이외에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침략,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또는 기타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상황에 의하여 생명, 안전, 자유가 위협받는 사람”을 난민의 범주에 추가했다(정인섭, 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144-145쪽 참조).

16) 난민협약 제정 당시 난민보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국제사회 역량이 부족하여 내부적 난민문제까지 국제적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내부적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삼을 경우 국적국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국적국에 대한 주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152-153쪽).

17) 그 외 협약난민은 아니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임난민’의 지위를 갖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참조.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난민 발생 국가들에서는 난민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개별국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더 높고 견고하게 만들며 이주자에 대한 노골적 비난을 숨기지 않고, 유럽에서도 이민 반대를 외치는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¹⁸⁾ 2015년 가을 헝가리는 1억 유로를 들여 세르비아와의 국경선에 이주자들을 막기 위한 철조망 담을 쳤고, 2016년 1월 덴마크는 난민이 도착하면 경찰관이 그녀들을 수색해 값나가는 재산을 압수하고 그것으로 그녀들의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¹⁹⁾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강화해서 이주자, 난민을 막으려 할뿐 그녀들에 대한 인간적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나라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또한 이러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 북으로는 휴전선이 있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더 견고하게 ‘국경’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물리적 영역의 경계가 아닌 심리적 국경-시간적(역사적), 공간적(삶의 터전), 문화적(정체성)으로 축적되어 형성된 마음에 새겨진 경계-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과 노동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존엄하고 자유와 권리를 가진 인간은 물리적, 심리적 경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18) 박경태, 「한국사회와 난민: 난민과 환대의 책임」, 『문화과학』 88, 문화과학사, 2016, 60쪽.

19) 제니퍼 웰시 지음, 이재황 옮김, 『왜 나쁜 역사는 반복되는가』, 산치럼, 2017, 28-29쪽. 제니퍼 웰시는 이런 모든 사태의 전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한 정부가 여전히 세계 정치지형을 지배하고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에 의한 통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제니퍼 웰시 지음, 이재황 옮김, 위의 책, 2017, 32쪽).

Ⅲ. 한인(韓人) 정체성과 난민 인식

1. 고려의 ‘통합’과 조선인

난민이 어떤 문제라는 것 자체가 ‘출현’과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기원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는 역사적 접근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해 온 문제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박영한은 한국인들이 난민 문제에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한국사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난민 문제는 역사적으로 위만이 조선으로 귀화한 것에서부터 구한말 외국인이 한반도에 정착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늘 곁에 있었다.²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수의 난민²¹⁾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로 통합되면서, 발해 유민이 상당수 고려로 망명했다. 고려 초기에는 통합에 관심을 두었고, 백제와 신라, 고구려 구분 없이 단일 민족체로 한반도 지역 내 ‘고려인’이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자 했다. 발해 유민에 대해서도 ‘三韓一統의 동족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의식은 조선을 거치면서 민족-국가 정체성으로 확립되었고 포용보다는 배타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려에는 이주, 귀화와 관련해 외국인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하는 ‘居留’가 있었다. 거류는 외교나 무역을 목적에 두고 일시적으로 고려에

20) 박영한은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해체가 난민 발생의 시작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위만이 연나라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고조선으로 망명했고, 고조선의 고위 관료였던 역계경도 고조선의 붕괴 직전에 부락집단과 함께 辰國으로 망명했다. 진국은 三韓의 전신이자 백제와 신라의 뿌리이며 현재 남한지역의 기원이다. 신라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존재했던 여러 군소 국가들의 멸망 이후 역사가 고대 한국의 난민사라고 할 수 있다(박영한, 「한국중세시대에 보이는 난민들」, 『다문화콘텐츠연구』 3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75-76쪽).

21) 여기서 난민의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하며 또한 사상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집단적 망명자”를 가리킨다(박영한, 위의 논문, 2019, 78쪽).

체류한 것을 가리킨다. 宋나라 사신이나 상인들은 길게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고, 국경 지역의 군소 부락의 추장들도 거류의 주 대상이었는데, 머무는 기한이 15일 이내였다. 거류 기간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고, 능력이 출중하면 관직을 주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권유하기도 했다. 고려에 정착하는 귀화나 이민을 ‘투화(投化)’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는 외국인의 귀화와 이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북방지역 발해인과 여진인, 거란인은 북방지역의 노동력과 개간지 확보와 차후 북방진출을 위한 준비이자 국경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 송인은 고급 인력 확보 차원에서 선진문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도록 했다.²²⁾ 또한, 고려는 투화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귀화한 외국인들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 보다는 투화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다. 여진, 거란 계통의 투화인은 토지를 분배받고, 세금과 요역을 면제 해주었고, 韓人과 몽골 계통이라는 이유로 고려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인종적, 종족적 구별로 인해 고려인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는 고려인의 민족적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투화인에 대한 차별이 짙어지기 시작해지면서 투화인의 고려인 자격을 얻고자 했지만 쉽지 않게 되었다.²³⁾

고려 초기 통합의 키워드는 한반도 지역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경 밖의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 특히, 고려사에서 난민이라 할 수 있는 발해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은 고구려의 후예라는 혈통적 인식과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원 간섭기를 거쳐 여말선초에는 한인과 비한인을 구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맞게 된다. 한반도 북쪽으로 여진을 정벌하고 남쪽으로는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여진 부락민이나 왜구들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투항하여 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 귀화하는 이들을 向化人이라고 했으며, 조선인과 다르게 2등 국민으로 취급되었다. 조선인으로 귀화하는 경우 고려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혜택

22) 박영한, 앞의 논문, 2019, 81-82쪽.

23) 박영한, 앞의 논문, 2019, 83쪽.

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에 귀화한 향화인들은 난민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들은 조선인으로 교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향화인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신분적 한계가 뚜렷했다.²⁴⁾

고려의 통합을 거쳐 한인이라는 종족의식은 조선에서 유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선인으로 변화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었지만, 난민의 수용과 정착에 관용적인 태도로 지원했다. 하지만 점차 차별에 더 무게를 두게 되면서 향화인들은 하위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⁵⁾

2. 해방 이후 내부적 난민의 양상

해방 이후 1948년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한 단독 정부였으며,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는 군정국가였다. 38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되었다. 남한 정부는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였다. 국가의 성립으로 38선 이남의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장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경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배타적인 대상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김준현은 국가가 탄생했지만, 그 국가의 국민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인민들을 ‘내적 난민’이라고 정의한다.²⁶⁾ 그는 ‘내적’이라는 의미를 국경 안에 있지만 난민에 준하는 상태라는 의미와 물질적인, 혹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내면적인 차원에서 난민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사용한다.²⁷⁾

24) 박영한, 앞의 논문, 2019, 89쪽.

25) 박영한, 앞의 논문, 2019, 96-97쪽.

26) 김준현, 「48체제와 38선 이남의 내적 난민들-상상/실재의 국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내러티브’로서의 난민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243쪽.

27) 김준현은 난민은 국경 또는 전선을 넘나들이 조건이기 때문에 국경 안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난민을 지칭하기 위해 ‘내적 난민’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는 “‘내적 난민’이란 (38선을 포함하는) 국경/경계 안에서 정신적/내면적인 차원

김준현은 내적 난민이라는 표현의 근거를 당시 해방기 국민국가 형성기인 '48년 체제'의 헌법과 실천의 괴리에서 찾고 있다. 그는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지만 그 과정은 은밀하게, 혹은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즉 48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을 제정 공포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반공주의, 내지 냉전의 국내화 과정이었다.²⁸⁾ 이어서 그는 상상된 국가와 실재하는 국가 사이의 거리가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언된 국가와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 사이의 거리가 발생한 것이 48년 체제의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라고 지적한다.²⁹⁾ 이러한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부터 38선 이남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국민으로서 주체적으로 국가체제를 선택하고 만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선언된 국가의 헌장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실재 작동하는 국가의 선택을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객체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³⁰⁾ 즉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구호나 감시의 대상인 '난민'이 된 것이다.

내적 난민이 내부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의 난민을 지칭한다면, 나라 잃고 타국에서 거주하다 귀환했지만, 국민이 되지 못하는 '내국 난민'도 있었다. 김예림은 난민은 국경 바깥으로의 投棄라는 월경적 사태에 처한 국제 난민으로부터 국경 내부의 실향민과 이재민 등과 같은 내국 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우를 포함한다고 말한다.³¹⁾ 국경 바깥에 거주하던 난민들은 국적 또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명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 즉 쓰레기와 같았다. 내국 난민에서 주목하는

으로 발생한 난민 상태, 혹은 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기호이다.”라고 말한다(김준현, 위의 논문, 2017, 139-140쪽).

28) 박찬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성과 유산」, 『시민과 세계』 14, 2008, 22쪽. 여기서는 김준현, 앞의 논문, 2017, 246쪽에서 재인용.

29) 김준현, 앞의 논문, 2017, 246쪽.

30) 김준현, 앞의 논문, 2017, 258쪽.

31)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339쪽 참조.

것은 해방기 귀환 현상과 귀환자이다.³²⁾ 해방기 한반도 밖에 있던 조선인 이주자 집단은 사실상 난민 상태에 처해 있었다. 즉 고국의 영토 경계 바깥에서 고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³³⁾ 그런데 남한 영토 내부로 들어온 귀환자들이라고 치우가 바로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그녀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장소는 ‘거리’였다. 김예림은 거리를 ‘주변화된 집단이 생존하는 공간’이자 ‘극한 상황에 몰린 이들이 정치화되는 공간’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리를 떠도는 귀환자 집단을 통해 영토와 거리의 틈에서 가능했던 삶에 주목한다.³⁴⁾ 귀환자들은 우선 국민이나 시민이 아닌 ‘인민’으로 분류된다.³⁵⁾ 그녀들은 귀환과 함께 국가의 국민으로 ‘소속할 권리’를 상상했겠지만³⁶⁾, 국민이 될 수도 인민에게 주어지는 삶의 양태 중 가장 어둡고 공포스러운 가능성인 난민이 될 수도 있었다.³⁷⁾ 귀환자 또는 戰災民들로 인해 인구가 폭증하고 식량, 빈곤, 실업 문제 등이 심

32) 김예림은 내국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영토 내에서 결코 보호받지 못한 채 국민과 시민의 변경을 떠도는 유랑자로 존재했고, 해방기 귀환자의 많은 수가 국제적인 난민 됨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결국에는 내국 난민으로 단순 치환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단지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난민을 생산했을 뿐인 국가라는 기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보았다(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39쪽).

33) 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49쪽.

34) 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56쪽.

35) 여기서 인민과 국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권국가의 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거하여 신분 및 권리와 의무를 공인받고 있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인민은 일정한 지역에 속하여 그 사회의 규약에 제약받는 포괄적인 피치자 집단을 일컫는다(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37쪽). 조르조 아감벤은 인민을 “동일한 하나의 용어가 구성적인 정치적 주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권리상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정치로부터 배제된 계급도 가리키는 것”이고 한다(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38쪽).

36) 김예림은 국가나 국민이 주체의 유일한 상상지평, 기대지평이 되는 상황 자체를 역사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국가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배타성과 억압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욕망하고 국민으로 소속되기를 열망했던 자들의 현실, 의식 그리고 정동에 접근 가능해질 것이다. ‘소속할 권리’를 향한 주체의 욕망과 요구는 신중하게 사유될 필요가 있다(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35쪽).

37) 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38쪽.

각해졌고, 그녀들에 대한 구호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과 제도에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정책 마련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귀환자들은 거리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고, 난민의 형상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간에 수용되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성되었다.³⁸⁾ 귀환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행위에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는 좌익과 우익의 정치 집단이나 활동가와 연결되어 ‘거리의 정치’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귀환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조직과 단체들이 등록 취소된다. 취소는 적어도 귀환자들의 집단이 자신들을 대표한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권리로부터 소원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했다.³⁹⁾

해방 후에 이어진 전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숙자는 전후의 혼란한 사회상과 경제적 궁핍을 보여주는 사회 현상 중에 ‘부랑자’에 주목한다. 부랑자는 사실 ‘월남인’, ‘이촌민’, ‘영세민’, ‘고아’ 등으로 당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 ‘부랑하는’ 행위를 이념적, 정치적 수준에서 단속함으로써 ‘국민/비국민’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는 존재론적 불안을 겪게 된다. 이들은 국가가 명명한 부랑자 표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국가가 지정한 비국민의 영역에 배치되면서 국민/비국민의 프레임 속에서 고통을 스스로 단속해야 하는 존재로 변신한다.⁴⁰⁾ 해방 후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실직, 실향으로 자기 자리를 잃고 거리를 부유하는 부랑자가 되었다. 이는 사회가 처한 위기였지만 국가는 단속과 강제수용으로 관리했다. 자신들의 상실과 위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국민’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단속과 격리 수용을 모면해야 했다.⁴¹⁾ 이들은 인민으로서 상실과 위기 속에서

38) 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59-362쪽.

39) 김예림, 앞의 논문, 2010, 363-365쪽.

40) 박숙자, 「해방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반공체제 속 ‘부랑자’와 ‘비국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98쪽.

41)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주체적 구성원으로 국민이 아니라 ‘비국민’이라는 낙

고통 받는 사실상 난민이었다. 하지만 난민이라는 것이 들통 나면 비국민으로 낙인찍혀 수용되었다.⁴²⁾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전쟁, 그리고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내부적 난민이 출현하였다. 이들 한인 난민들이 공통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 더 나아가 국가라고 하는 근대성의 공고한 토대에서는 필연적으로 비국민, 즉 난민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서 외부적 상태와 내면적 차원 모두에서, 정체성과 실존적 삶에서 국가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한 국가 안에서 인간으로 삶을 살기 위해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권리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그것이 아무리 자유로운 선택일지라도 다른 것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본래 인간의 권리와 생명을 국가에 저당 잡히고 주종 관계를 승인하는 것, 즉 순수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IV. 국가와 인권의 범주에서 난민 인식

1. 난민 인권과 소수자 차별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인권이다. 난민은 박해와 공포로 인해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

인찍히지 않기 위한 흉내 내기이다. 국가가 이산과 이별, 탈향과 실직으로 배회하는 자들은 ‘부랑하는 자’로 ‘비국민’으로 호출했기 때문이다(박숙자, 위의 논문, 2017, 109쪽).

42) 부랑자들은 우범 인물로 처리대상이었으며, 5·16 이후 강제수용이 강화되어, 념마주의와 부랑자들은 근로재건단에 편입시키고, 정신병자들은 국립정신병원에서 관리하고, 윤락여성은 시립부녀자보호지도소로 보냈다. 또한, 고아와 신문 팔이들은 선감학원에서 교육시켰다. 국가가 국민을 직접 재건, 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박숙자, 위의 논문, 2017, 93-94쪽).

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³⁾ 여기서 인권은 비역사적이고 보편적 권리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어떤 공동체건 상관 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사회적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⁴⁴⁾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을 보편규범으로 존중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인권이 주권에 의해서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난민의 인권은 국가의 주체인 국민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말해질 수 있으며,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소수자’를 위한 실천적 발화이다. 인권이 소수자에 대한 것이고,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에 다수자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⁴⁵⁾ 그런데 인권을 소수자의 문제로만 제한할 수 있는가? 인권을 보편적 권리로 담보해주는 토대는 무엇인가?

박경태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수자를 정의한다.⁴⁶⁾ 소수자는 내부의 식민지이다. 마치 식민지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확장에 따라 주권을 상실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들도 내부의 식민지가 되어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고 차별받는다. 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소수자가 열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당화된다.⁴⁷⁾ 여기서 핵심은 ‘소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토대를 제공하

43) 김대근·강태경·이일,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91쪽.

44) Charles R. Beitz,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쪽. 여기서 김대근·강태경·이일, 위의 책, 292쪽에서 재인용.

45) 김대근·강태경·이일, 위의 책, 2017, 280-281쪽.

46)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53쪽.

47)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54쪽.

는 것은 국가이다. 근대 국가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 국민을 탄생시켰고, 국민은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구별을 나타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내부적 구별이 곧 소수자의 탄생이나 차별과 연결된다.⁴⁸⁾ 즉,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이 국민/비국민 프레임으로 차별받는 집단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수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 역시 국가이다. 이 때문에 인권 문제는 국가의 법률적, 정책적 영역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이 점은 역설적으로 난민 인권이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체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난민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베트남 보트피플 수용과 인식

2018년 제주 예멘 난민들의 출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매우 상반되면서 격렬했다. 마치 ‘국민’과 ‘인권’이 서로 대치하는 것 같았다. 국가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것은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도 여전히 인간인 한에서 인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민족국가에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1975년에 공산화된 월남에서 약 천오백여 명의 피난민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그중 75년 말까지 국내 정착한 내국인 외 977명이 국외로 이주하면서 구호활동이 마무리됐다.⁵⁰⁾ 이후 1977년부터는 베트남 보트

48)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55-58쪽.

49) 김민수,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에 대한 연구·민주적 반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3쪽.

50) 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28-29쪽. 노상학은 당시 ‘월남난민’을 국민적 차원에서 환영하고 부산여고에 수용 시설을 마련하여 보호했다고 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지원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다(노상학, 「월남난민들의 오늘과 내일」, 『기독교사상』 23(8), 대한기독교서회, 1979, 53-55쪽). 다만, 75년에는 한국에서 군함을 보내서 입국한 경우이고, 상

피플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유입이 장기화되자 부산에 월남난민구호소를 설치해 수용했으나 임시 상륙자로 분류해 관리했다. 그/녀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단 한 명의 국내 정착도 허용되지 않았다. 정인섭은 베트남 보트피플을 국제사회에서 분담하여 각국이 일정한 수의 베트남인들의 정착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구조된 베트남 보트피플을 수락할 제3국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무기한 수용소에 수용했고, 이러한 비인도적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⁵¹⁾ 한국은 마지막 베트남 보트피플을 제3국으로 보낸 1993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00년 유엔 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이 된 이듬해야 비로소 1명의 신청자에게 협약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했다.⁵²⁾

2018년 예멘 난민은 국가적 이슈가 되었고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베트남 보트피플의 경험에서 보자면 국민적 관심이 난민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다.⁵³⁾ 논쟁의 핵심은 국민과 난민의 대립이었지만 특히,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크게 작용했다.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난민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방인 또는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타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근본 모를 낫선 존재로 여겨졌다.’⁵⁴⁾ 난민이 낫선 타자로서 단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존재로 읽히는 것이다. 그런데 난민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 존재’이다.⁵⁵⁾ 낫선 타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당수가 한국인 및 그 가족이었다.

51) 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29-32쪽.

52) 정인섭·황필규 편, 앞의 책, 2011, 38쪽.

53) 이용승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 다문화정책을 시행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안의 인종,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용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학계의 연구가 무색하리만치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이용승,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민족연구』 72, 2018, 174쪽).

54)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48쪽.

55)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52쪽.

그녀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는 존재이다. 타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주체의) 행위에 있으며, 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가 결정된다. 즉 난민에 대한 말과 행동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인식(들)을 반영한다.

난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⁵⁶⁾ 조르조 아감벤의 주장처럼 국가와 인권을 넘어서, 상상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이용승은 “인권의 보편성이 국경에 갇혀있듯 우리의 상상 또한 국경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좀처럼 국경을 넘어 인간적 연민, 나아가 연대를 확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난민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무로서 말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⁵⁷⁾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과 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V. 자연상태의 난민 개념과 인식

1.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인간

앞서 난민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와 국민과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권은 모두의 인권이지만 그것이 권리로서 행사되기 위한 토대는 국가나 국민 또는 법률적 인정이다. 그

56) 이용승은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근거들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 과거 국제적 도움에 대한 보답, 국제적 위상 또는 국력에 맞다 는 것, 이익의 관점에서 다양성은 국가 발전에 이롭다는 것, 난민 발생의 구조적 통찰을 통해 난민을 발생시키는 체계를 향한 적대에 기초한 협력, 소통, 연대하는 것 등으로 정리하면서 효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한다(이용승, 앞의 책, 2018, 177-178쪽).

57) 이용승, 앞의 책, 2018, 179쪽.

런데 조르조 아감벤은 오히려 난민 개념을 인권 개념으로부터 해방할 것을 주문한다. 그에 따르면 난민은 국민국가에 기반한 어떤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난민 그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난민은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범주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 개념이라고 보았다. 즉 난민은 근대적 범주에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간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⁵⁸⁾

조르조 아감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 개념은 인간이라는 순수한 사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과 처음 대면하자마자 파산할 것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느 한 국가의 시민권이라는 형태를 갖지 못하면 국민국가 체계에서 소위 신성하고 양도불가능한 인권은 모든 후견인을 상실한다고 역설했다.⁵⁹⁾ 국민국가 체제에서 인간은 태어난 즉시 국민이 된다. 인간으로의 ‘출생’과 시민의 ‘권리’가 단단하게 결합 돼 있는 것이다. 난민의 출현이 국민국가의 질서에서 걱정스러운 요소를 대표하는 까닭은 인간과 시민의 동일성, 출생과 국적의 동일성을 깨뜨림으로써 주권의 원초적인 허구/의제를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⁶⁰⁾ 앞서 살펴봤던 ‘귀환자’, ‘전재민’, ‘부랑자’ 등은 국가의 국민으로 소속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한국이란 국가에서 실존했지만, 정상적인 국민(시민)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채로 비참하게 생존하는 생명이었다. 이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행위’ 했지만 결국 ‘취소’되었고,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었다.

‘4차 산업시대’는 기술로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이 시

58)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259-260쪽.

59) 또한 그는 이러한 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제목 자체의 모호함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한다(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009, 29쪽 참조).

60)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009, 32쪽.

대의 키워드로 ‘공유’가 있다. ‘소유’에서 ‘공유’, 또는 ‘소유에서 사용으로’의 이행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모두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또 소유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위한 사용’에 있다면, 굳이 소유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 국가는 영토라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하는가? 다른 나라와 영토를 공유할 수 없을까? 조르조 아감벤은 “두 국민국가가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경계선으로 분리되는 대신 두 정치공동체가 똑같은 지역에서, 일련의 상호 간의 바깥영토를 통해 절합되어 상대 공동체로 서로 엑소더스하는 것”을 상상한다.⁶¹⁾ 그가 말하는 것은 영토를 공유한다기보다는 비영토성이다. 그런데 국가와 영토는 분리 가능한가? 영토는 국가가 소유할 권리를 갖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토대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국민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애초에 모두의 것이며, 그러한 상상지평에서 국경에 의한, 인간에 대한 포용/배제의 논리를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토의 배타적 소유 권리 문제

‘땅의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조명할 수 있다. 김광식은 난민 문제를 인권이 아니라 국경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논의한다.

“난민이란 무엇인가? 난민이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해 자기 삶을 떠나 다른 나라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다. 난민의 권리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해 자기 삶을 떠나 다른 나라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권리이다. 난민 문제란 무엇인가? 난민 문제란 난민의 권리와 땅을 소유할 나라의 권리를 놓고 다투는 문제이다.”⁶²⁾

61)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009, 35쪽.

62) 김광식, 「삶터, 모두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님: 난민과 국경에 대한 철학

그는 난민의 '소속할 권리'와 국가의 '소유할 권리' 사이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경은 나라 땅의 테두리이고, 나라 땅은 나라가 소유한 땅이다. 더 정확히는 나라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땅이다. 땅을 소유할 권리는 점유의 권리,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전부의 권리이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배타적 권리로 이해된다.”⁶³⁾ 무엇보다 핵심은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점이다. 삶의 터전인 땅의 소유 권리가 과연 정당한가? 나라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나타내는 국경은 과연 정당한가?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면 배타적인, 독점적으로 소유한 권리는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땅에는 주인이 없었다. 자연 상태에서는 거주하던 큰 나무 밑이나 동굴에 '위험'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 거주할 곳이 누군가에 의해 '출입금지' 됐을 때 소유할 권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땅을 소유할 권리는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누구도 땅을 소유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무엇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 자율적 존재”⁶⁴⁾이기 때문이다. 자기 땅이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기 삶의 방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설사 그 땅에서 더 많은 효용 가치를 생산해 나눠준다고 해도 말이다.⁶⁵⁾ 김광식은 모든 사람은 '난민'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과거의 난민 또는 그 자손과 미래의 잠재적 난민을 포함하여 모두를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난민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적 성찰], 『사회와 철학』 37, 사회와철학연구회, 2019, 28쪽.

63) 김광식, 위의 논문, 2019, 28쪽.

64) 김광식, 위의 논문, 2019, 45쪽.

65) 김광식, 위의 논문, 2019, 33-49쪽. 김광식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이야기 방식을 변용해 논의를 전개한다. 반론을 제기하는 대화 상대는 소유할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로크와 노직의 논리이다.

난민 문제가 근본적으로 모두의 것이며, 땅을 독차지하고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내세우는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⁶⁶⁾ 결국,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독점적인 주인은 없다는 것을 환기함으로써 난민을 배제하는 배타적 논리의 근거 없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땅의 소유권 문제의 핵심에는 최초의 소유할 권리를 발명한 천재적인 누군가와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자가 소유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것도 아닌 땅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땅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것은 ‘원초적 폭력’, 또는 ‘원초적 수탈’에 기원하는 주종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권력 관계는 개인과 집단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VI. 결론

한국은 역사적으로 (피)난민에 대한 경험이 적지 않다. 한국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외부적 난민과 내부적 난민이 출현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인은 자기 역사와 땅으로부터 유리된, 앞이 막막한 난민이었다.⁶⁸⁾ 해방기 정부 수립과 체제 유지 과정에서도 가난하고 자기 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은 온전히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

66) 김광식, 위의 논문, 2019, 30쪽.

67) 강신주는 “주종 관계는 원초적인 폭력, 즉 원초적인 수탈을 통해서 피통치자들을 결핍 상태로 만들고, 수탈한 것을 제한적이거나 수탈당한 자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피통치자들의 결핍 상태를 심화시키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6, 656쪽). 또 그는 주종관계가 ‘결핍의 발생’을 통해서 작동하는데, 문제는 결핍된 존재로 만든 자에게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신주, 위의 책, 2016, 655쪽).

68) 이한우, 앞의 책, 2002, 33쪽.

민 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여 입증시켜줄 기표가 사라진, 빗금 그어진 주체인 난민이었다.⁶⁹⁾ 실제 작동하는 국가에 복종하고 순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국민으로 분류되어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민주 국가의 성원으로서 자율적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민으로서 가장 어둡고 공포스러운 상태’로 내몰리거나 우려와 불안 속에서 자기 검열하는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로 들어온 낯선 타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들은 우선적으로 비호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반대는 난민 인정 심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그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재가 있다.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이탈해 비호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는 민족국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즉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다. 국가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는 민족국가 공동체 성원의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 인정은 그것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인간적 존중의 문제이다.

예멘 난민 사태에서 한국의 난민법과 난민 심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위 난민’을 가려내겠다고 답변했다.⁷⁰⁾ 실제로 2018년 5월 이후 7월까지, 2개월간 난민법 개정법률안 및 폐지안이 8건 발의됐는데, 난민 심사 강화와 체류지역 제한 등 난민 보호보다는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⁷¹⁾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난민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협약난민의 범위를 협

69) 이상철, 앞의 책, 2011, 9쪽.

70) 이용승, 앞의 책, 2018, 174쪽.

71) Jeong Hwa Hong, Eun Hye Kim, “A Review of Refrgee Policy in South Korea-Focused on Yemeni Refugee in Jeju”, *Crisisonomy* vol. 15 No. 4, 2019, 54쪽.

소하게 해석하고 난민 심사 및 인정절차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박경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난민 심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기에 난민신청자가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 뒤에 숨어 있는 사고방식, 즉 난민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적을수록 좋다는 가정이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세 번째, 이주가 일반화되고 난민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 또는 난민의 숫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⁷²⁾ 보다 근본적으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앞에 출현한 낯선 타자를 이웃으로 또는 적어도 순수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난민은 실존하는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민에 대해 ‘가짜/진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좋은’ 이웃은 포용하고 우리와 동일시 될 수 없는 ‘나쁜’ 이웃은 배제하려는 것과 같다.⁷³⁾

난민 인정 심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박해’에 있다. 무엇을 박해로 볼 것인가는 문화적 맥락과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⁷⁴⁾ 보편적 규범과 문화상대주의의 해묵은 논쟁도 여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난민의 법률적 개념이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박해 사실에 얽힌 ‘문화적 차

72) 박경태, 앞의 논문, 2016, 63-64쪽 참조.

73) 한유석은 ‘좋은/나쁜’의 이분적 카테고리로 난민을 판단하고 포용/배제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다. 여기서 ‘좋은’은 윤리적 가치판단이기 하나 절대적 선이나 도덕이 아니라 주체다움 또는 주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한유석, 「‘좋은’ 난민, ‘나쁜’ 난민: 태국 북부 지역의 별거벗은 타자들」, 『동남아연구』 29권 3호, 2020. 참조).

74) 김희강,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담론 201』 18(3), 2015, 21쪽.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정하는가와 관계된다. 따라서 난민 인정과 수용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난민 인정은 완전히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낯선 타자에 대한 긍정적 통찰이 가능할 것이다.⁷⁵⁾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만으로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의 포용/배제의 논리를 넘어서 문화적 심리적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낯선 타자인 난민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눈앞의 타자를 살아 숨 쉬는 존엄한 생명으로서 대할 때 비로소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간적 가치를 담은 규범이 가능하며, 난민이 ‘친근한’ 타자로서 이웃이 될 것이다.

75) 김슬기, 「문화적 타자의 공동구성과정으로서 난민인정절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3쪽.

참고문헌

- 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6.
- 김광식, 「삶터, 모두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난민과 국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37, 사회와철학연구회, 2019.
- 김대근·강태경·이일,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김미림, 「難民問題와 UNHCR의 역할-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민수,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에 대한 연구-‘민주적 반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준현, 「‘48체제’와 38선 이남의 내적 난민들-상상/실재의 국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내러티브’로서의 난민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 김슬기, 「문화적 타자의 공동구성과정으로서 난민인정절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 김희강,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담론 201』 18(3), 2015.
- 노상학, 「월남난민들의 오늘과 내일」, 『기독교사상』 23(8), 대한기독교서회, 1979.
- 라파엘 페르버 지음, 조국현 옮김, 『철학적 기본 개념』, 동문선, 2002.
- 마이클 왈저 지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2017.
- 박경태, 「한국사회와 난민: 난민과 환대의 책임」, 『문화과학』 88, 문화과학사, 2016.
- 박숙자, 「해방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반공체제 속 ‘부랑자’와 ‘비국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 박영한, 「한국중세시대에 보이는 난민들」, 『다문화콘텐츠연구』 3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 박찬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성과 유산」, 『시민과 세계』 14, 2008.
- 손사라,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슬라보예 지젝 지음, 김희상 옮김, 『새로운 계급투쟁』, 자음과 모음, 2016.
- 오창은, 「난민의 세계화와 현대성의 파국」, 『문화과학』 88, 2016.
- 이상철, 「난민(難民, Refugee)」, 『제3시대』 27·28, 2011.
- 이용승,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민족연구』 72, 2018.
- 이한우, 『한국은 난민촌인가』, 책세상, 2002.
- 정인섭·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 제니퍼 웰시 지음, 이재황 옮김, 『왜 나쁜 역사는 반복되는가』, 산처럼, 2017.
- 한유석, 「‘좋은’ 난민, ‘나쁜’ 난민: 태국 북부 지역의 벌거벗은 타자들」, 『동남아연구』 29권 3호, 2020.
- Charles R. Beitz,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Jeong Hwa Hong, Eun Hye Kim, “A Review of Refrgee Policy in South Korea-Focused on Yemeni Refugee in Jeju”, *Crisisonomy* vol. 15 No. 4, 2019.
-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ABSTRACT

The Problem of Refugee Awareness in Korean Society

Kim, Jin-sun *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 perspective that improves refugee awareness by analyzing Korean society's perception and complementing problems about refugees. First of all, to help understand the concept of refugees so fa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concept and changes in historical perceptions of refugees in Korean history were summarized. Then, on the refugee issue, the relationship with national sovereignty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Korea established its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It emerged as exclusivity to oth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odern national state and produced a variety of internal refugees. Korea has never recognized refugees until the late 20th century, and even in the recent Yemen refugee crisis on Jeju Island, disgust and opposition against refugees had occurred strongly.

The refugee issue need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me, not a confrontation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Because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be respected, and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grounds are needed. However, the legal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not everything.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go beyond physical and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psychological boundaries and recognize and coexist with their respective historical, cultural and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history, refugees have always been with us, but they have not been properly addressed. In particular, refugees in modern history were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to maintain state power. He/she was not guaranteed basic human rights as non-citizens and was subject to surveillance and crackdown. This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Refugees (韓人難民) should not be repeated to refugees who came to Korea. The Koreans already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Koreans must recognize ourselves through strangers and move toward awareness for human exchange and coexistence.

Key-words: Refugee, Internal Refugee, Inclusion/Exclusion, Korean Refugee(韓人難民), The Other

논문투고일 2020. 9. 13.

심사완료일 2020. 10. 5.

게재확정일 2020. 10. 16.